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51
----------	------

제 안 년 월 일 : 2023년 9월 5일

발 의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성연 의원이 2023년 6월 19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의안번호 958)과 서울특별시장이 2023년 8월 14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153)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 9. 5.)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본 제정조례안 2건은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예비군 훈련장에 응소하는 경우, 그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송버스 운영 경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정된 2건의 의안은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응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나 형식면에서 서로 별다른 차이가 없고,
 - 각 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등이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오류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여 본 2건의 조례안을 통합·조정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제명을 전체 규율 내용이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명)
- 지원 대상 예비군을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으로 한정(안 제1조)
- 관련 법령의 정의와 같거나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여 정의(안 제2조)
- 예비군 육성 지원 절차에 대한 근거를 추가 규정(안 제3조)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비군 대원”이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예비군대원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군 훈련장”이란 제1호의 지역예비군 대원 소집 장소로서 제52사단 및 제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수송버스”란 제1호의 지역예비군 대원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제2호의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